

고 소 장

고소인 ㅇㅇㅇ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(전화번호: 000 - 0000)

피고소인 △ △ △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,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 소 사 실

피고소인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에 사는 자인데 20○○. ○. ○. ○○: ○○경에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 소재 고소인 경영의 술집에서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고소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"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."고 협박하고 이에 반항하는 고소인의 목을 조르고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강타한 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질내에 삽입하여 고소인을 ○회 강간하였습니다. 이로 인하여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○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외음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사실이 있습니다.

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상해진단서

1통

 20 ○ ○ 년
 ○ 월
 ○ 일

 위 고소인
 ○ ○ ○ ○ (인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| 제출기관 | 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 | 공소시효 | ○년(☞공소시효일림· <mark>›</mark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고소권자 | 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 | 소추요건 | |
| 제출부수 | 고소장 1부 | 관련법규 | 형법 301조 |
| 범죄성립 | 강간죄・유사강간죄・강제추행죄・준강간죄・준강제추행죄를 범한 | | |
| 요 건 |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| | |
| 형 량 | ·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| | |
| 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 | ○ 근거 : 검찰청법 10조 ○ 기간 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 ○ (재정신청) ○ 근거 : 형사소송법 제260조 ○ 기간 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 ○ (헌법소원) ○ 근거 : 헌법재판소법 68조 ○ 기간 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69조) | | |

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